

1. 개정이유

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기준 별표의 제목에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시험 면제 근거가 되는 조문 번호를 병기하고,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갱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 기준에 대한 근거 법령 기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서식의 제목에 관련 조항(제52조)을 추가함(안 별표 3).
- 나.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육 이수 확인 및 실명 확인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87조의4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의”를 “제1호 및 제6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운전면허증 갱신 및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에
관한 사무

별표 3의 제목 중 “(제51조 관련)”을 “(제51조 및 제52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7조의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, 범죄 경력정보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의 사무의 경우 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 는 제외한다. 1. ~ 3. (생략) 4.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5. 삭제 <u><신설></u>	제87조의4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 제1호 및 제6호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따른 <u>운전면허증 갱신 및</u> ----- ----- 6. 법 제56조의3에 따른 자율주 <u>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</u> <u>한 교육에 관한 사무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